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2p 빨간키	개념,공식-설명	저장소의 구분 표 1. 하단 : 옥외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저장소의 구분 표 1. 하단 : 옥내탱크저장소는 제외한다												
		수정 사유	본문 오류												
6~6p 기출유사문제 번호 : 6	해설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수정 사유	해설 오류												
9~9p 빨간키	개념,공식-설명	(2) 허가받지 않고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고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와 신고하지 않고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수정 사유	본문 오류												
11~11p 빨간키	개념,공식-설명	(4) 총수수압시험 제외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4) 총수 수압검사 제외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수정 사유	본문 오류												
13~13p 빨간키	개념,공식-설명	(3) 체납과징금 징수 절차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	(3) 체납과징금 징수 절차 : 지방행정재정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												
		수정 사유	본문 오류												
14~14p (4)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 표 내용	개념,공식-설명	전년도의 1년간 매출금액	전년도의 1일 평균 매출금액												
		수정 사유	본문 오류												
14~14p 빨간키	개념,공식-설명	(5) 안전관리자 직무 미시행시, 미선임시 업무 : 위험물취급자격취득자 또는 대리자	(5) 안전관리자 직무 미시행시, 미선임시 업무 : 위험물취급자격취득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												
		수정 사유	본문 오류												
15~15p 빨간키	개념,공식-설명	<table border="1"> <thead> <tr> <th>제조소의 종류 및 규모</th> <th>안전관리자의 자격</th> </tr> </thead> <tbody> <tr> <td>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td> <td>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td> </tr> <tr> <td>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td> <td>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td> </tr> </tbody> </table>	제조소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table border="1"> <thead> <tr> <th>제조소의 종류 및 규모</th> <th>안전관리자의 자격</th> </tr> </thead> <tbody> <tr> <td>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td> <td>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td> </tr> <tr> <td>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td> <td>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td> </tr> </tbody> </table>	제조소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제조소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제조소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수정 사유	본문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6~16p 빨간기	개념,공식-설명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font-size: small; margin-right: 5px;">취급소</div>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100px; height: 20px;">생략</td><td rowspan="5" style="font-size: x-small; padding: 2px;">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td></tr> <tr><td style="width: 100px; height: 20px;">생략</td></tr> </table> </div>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top: 5px;">6.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따라설치된 자기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u>일반취급소</u></p>	생략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font-size: small; margin-right: 5px;">취급소</div>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width: 100px; height: 20px;">생략</td><td rowspan="5" style="font-size: x-small; padding: 2px;">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td></tr> <tr><td style="width: 100px; height: 20px;">생략</td></tr> </table> </div>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top: 5px;">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기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p>	생략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수정 사유	본문 오류																																																																
20~20p 기출유사문제	문제-본문	02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재광 ·조명·환기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02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채광 ·조명·환기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정 사유	문제 오류																																																																
29~29p 7번 해설 수정 번호 : 7	해설	<p>① 다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8항></p> <p>③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7항></p>	<p>①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험물산업기사 중 위험물취급자격자는 위험물 취급이 가능하다.<법 제15조 제7항></p> <p>③ 다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8항></p>																																																																
		수정 사유	해설 오류																																																																
33~33p 빨간기	개념,공식-설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x-small;"> <tr> <td style="width: 15%;">정기점검</td> <td style="width: 35%;">정기점검 횟수</td> <td style="width: 15%;">년1회 이상</td> <td style="width: 35%;">관계인이 자제 또는 회회</td> </tr> <tr> <td></td> <td>정기점검이외의 점검결과 통보</td> <td>10일 이내</td> <td>점검일시합자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td> </tr> <tr> <td></td> <td>정기점검의 기록보존</td> <td>3년간</td> <td></td> </tr> <tr> <td>구조안전 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td> <td>점검시기</td> <td>기간 내에 1회</td> <td>완공검사 기록교부 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3년 이내, (공사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td> </tr> <tr> <td></td> <td>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td> <td>25년</td> <td></td> </tr> <tr> <td></td> <td>공사에 연결한 경우</td> <td>30년</td> <td></td> </tr> <tr> <td>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td> <td>정기검사 시기</td>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결과를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td> </tr> <tr> <td></td> <td>정기검사결과 교부 및 통보</td> <td>10일 이내</td> <td>교부 : 검사공표일로부터 관계인, 통보 : 검사공표일로부터 소방서장</td> </tr> </table>	정기점검	정기점검 횟수	년1회 이상	관계인이 자제 또는 회회		정기점검이외의 점검결과 통보	10일 이내	점검일시합자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		정기점검의 기록보존	3년간		구조안전 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	점검시기	기간 내에 1회	완공검사 기록교부 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3년 이내, (공사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		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	25년			공사에 연결한 경우	30년		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	정기검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결과를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정기검사결과 교부 및 통보	10일 이내	교부 : 검사공표일로부터 관계인, 통보 : 검사공표일로부터 소방서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 x-small;"> <tr> <td style="width: 15%;">정기점검</td> <td style="width: 35%;">정기점검 횟수</td> <td style="width: 15%;">년1회 이상</td> <td style="width: 35%;">관계인이 자제 또는 회회</td> </tr> <tr> <td></td> <td>정기점검이외의 점검결과 통보</td> <td>10일 이내</td> <td>점검일시합자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td> </tr> <tr> <td></td> <td>정기점검의 기록보존</td> <td>3년간</td> <td></td> </tr> <tr> <td>구조안전 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td> <td>점검시기</td> <td>기간 내에 1회</td> <td>완공검사 기록교부 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3년 이내, (기술원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td> </tr> <tr> <td></td> <td>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td> <td>25년</td> <td></td> </tr> <tr> <td></td> <td>기술원에 연결한 경우</td> <td>30년</td> <td></td> </tr> <tr> <td>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td> <td>정기검사 시기</td> <td colspan="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결과를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td> </tr> <tr> <td></td> <td>정기검사결과 교부 및 통보</td> <td>10 이내</td> <td>교부 : 검사공표일로부터 관계인, 통보 : 검사공표일로부터 소방서장</td> </tr> </table>	정기점검	정기점검 횟수	년1회 이상	관계인이 자제 또는 회회		정기점검이외의 점검결과 통보	10일 이내	점검일시합자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		정기점검의 기록보존	3년간		구조안전 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	점검시기	기간 내에 1회	완공검사 기록교부 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3년 이내, (기술원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		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	25년			기술원에 연결한 경우	30년		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	정기검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결과를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정기검사결과 교부 및 통보	10 이내	교부 : 검사공표일로부터 관계인, 통보 : 검사공표일로부터 소방서장
정기점검	정기점검 횟수	년1회 이상	관계인이 자제 또는 회회																																																																
	정기점검이외의 점검결과 통보	10일 이내	점검일시합자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																																																																
	정기점검의 기록보존	3년간																																																																	
구조안전 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	점검시기	기간 내에 1회	완공검사 기록교부 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3년 이내, (공사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																																																																
	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	25년																																																																	
	공사에 연결한 경우	30년																																																																	
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	정기검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결과를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정기검사결과 교부 및 통보	10일 이내	교부 : 검사공표일로부터 관계인, 통보 : 검사공표일로부터 소방서장																																																																
정기점검	정기점검 횟수	년1회 이상	관계인이 자제 또는 회회																																																																
	정기점검이외의 점검결과 통보	10일 이내	점검일시합자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																																																																
	정기점검의 기록보존	3년간																																																																	
구조안전 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	점검시기	기간 내에 1회	완공검사 기록교부 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3년 이내, (기술원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																																																																
	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	25년																																																																	
	기술원에 연결한 경우	30년																																																																	
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	정기검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결과를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정기검사결과 교부 및 통보	10 이내	교부 : 검사공표일로부터 관계인, 통보 : 검사공표일로부터 소방서장																																																																
		수정 사유	본문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35~35p 빨간키	개념, 공식-설명	<p>(2) 보유공기 규제대상</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제조소</th> <th colspan="6">저장소</th> <th colspan="6">취급소</th> </tr> <tr> <th>옥내 탱크</th> <th>옥외 탱크</th> <th>지하 탱크</th> <th>이동 탱크</th> <th>간이 탱크</th> <th>일반 탱크</th> <th>옥외</th> <th>주유</th> <th>판매</th> <th>일반</th> <th>이송</th> </tr> </thead> <tbody> <tr> <td>보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 (옥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공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 (옥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옥내 탱크	옥외 탱크	지하 탱크	이동 탱크	간이 탱크	일반 탱크	옥외	주유	판매	일반	이송	보유	○	○	○	×	×	×	○ (옥외)	×	○	×	×	○	○	공기	○	○	○	×	×	×	○ (옥외)	×	○	×	×	○	○	<p>(2) 보유공기 규제대상</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제조소</th> <th colspan="6">저장소</th> <th colspan="6">취급소</th> </tr> <tr> <th>옥내 탱크</th> <th>옥외 탱크</th> <th>지하 탱크</th> <th>이동 탱크</th> <th>간이 탱크</th> <th>일반 탱크</th> <th>옥외</th> <th>주유</th> <th>판매</th> <th>일반</th> <th>이송</th> </tr> </thead> <tbody> <tr> <td>보유</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 (옥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공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 (옥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옥내 탱크	옥외 탱크	지하 탱크	이동 탱크	간이 탱크	일반 탱크	옥외	주유	판매	일반	이송	보유	○	○	○	×	×	×	○ (옥외)	×	○	×	×	○	○	공기	○	○	○	×	×	×	○ (옥외)	×	○	×	×	○	○
구분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옥내 탱크	옥외 탱크	지하 탱크	이동 탱크	간이 탱크	일반 탱크	옥외	주유	판매	일반	이송																																																																																																	
보유	○	○	○	×	×	×	○ (옥외)	×	○	×	×	○	○																																																																																																
공기	○	○	○	×	×	×	○ (옥외)	×	○	×	×	○	○																																																																																																
구분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옥내 탱크	옥외 탱크	지하 탱크	이동 탱크	간이 탱크	일반 탱크	옥외	주유	판매	일반	이송																																																																																																	
보유	○	○	○	×	×	×	○ (옥외)	×	○	×	×	○	○																																																																																																
공기	○	○	○	×	×	×	○ (옥외)	×	○	×	×	○	○																																																																																																
		수정 사유	본문 오류																																																																																																										
41~41p (7) 피뢰설비 박스 내용	개념, 공식-설명	<p>2) 제조소의 주위에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피뢰침</p>	<p>2) 제조소의 주위에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p>																																																																																																										
		수정 사유	본문 오류																																																																																																										
49~49p 빨간키	개념, 공식-설명	<p>(1) 옥외저장탱크 ① 일반 옥외탱크와 준특정 옥외탱크(특정 옥외탱크는 제외)의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 압력탱크: 최대사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것 ㉡ 압력탱크 외의 탱크: 충수시험</p> <p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압력탱크: 최대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p> <p>③ 특정 옥외탱크의 용접부의 검사: 방사선투과시험, 진공시험, 비파괴시험</p>	<p>(1) 옥외저장탱크 ① 특정준특정 옥외저장탱크 외의 탱크: 3.2mm 이상의 강철판으로 할 것 ㉠ 압력탱크: 최대사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것 ㉡ 압력탱크 외의 탱크: 충수시험</p> <p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text-align: center;">압력탱크: 최대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p> <p>③ 특정 옥외탱크의 용접부의 검사: 방사선투과시험, 진공시험 등의 비파괴시험</p>																																																																																																										
		수정 사유	본문 오류																																																																																																										
53~53p 기출유사문제 번호: 9	문제-본문	<p>③ 배풍기는 강제배기 방식으로 하고,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하가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배풍기는 강제배기 방식으로 하고,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수정 사유	문제 오류																																																																																																										
53~53p 빨간키	개념, 공식-설명	<p>(4) 옥내저장탱크 ① 압력탱크(최대사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를 초과하는 탱크) 외의 탱크: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p>	<p>(4) 옥내저장탱크 ① 압력탱크(최대사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를 초과하는 탱크) 외의 탱크: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설치</p>																																																																																																										
		수정 사유	본문 오류																																																																																																										
56~56p 빨간키	개념, 공식-설명	<p>(8) 탱크전용실은 벽및바닥: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구조</p>	<p>(8) 탱크전용실은 벽바닥 및 뚜껑: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구조</p>																																																																																																										
		수정 사유	본문 오류																																																																																																										
60~60p 빨간키	개념, 공식-설명	<p>(4)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p>	<p>(4)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p>																																																																																																										
		수정 사유	본문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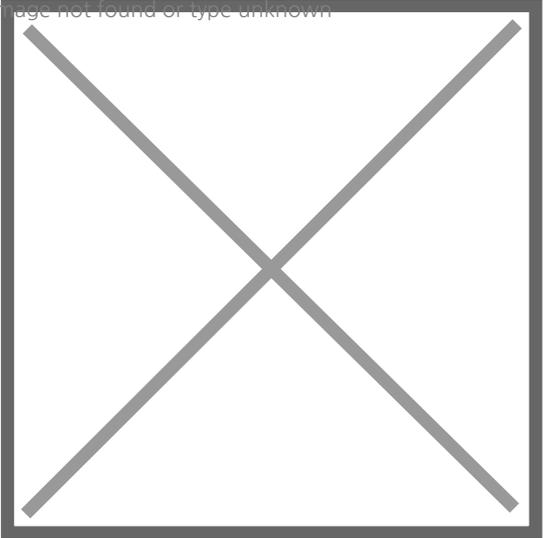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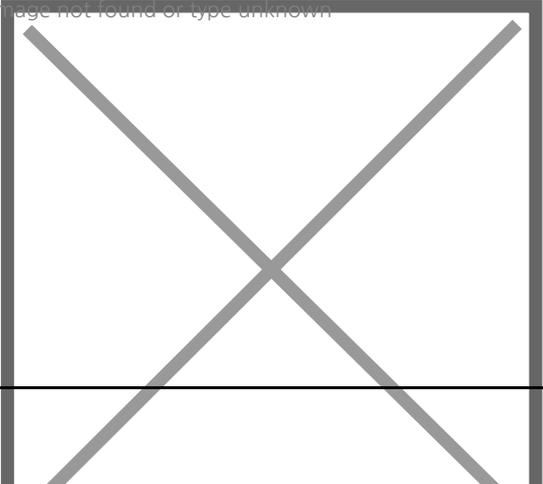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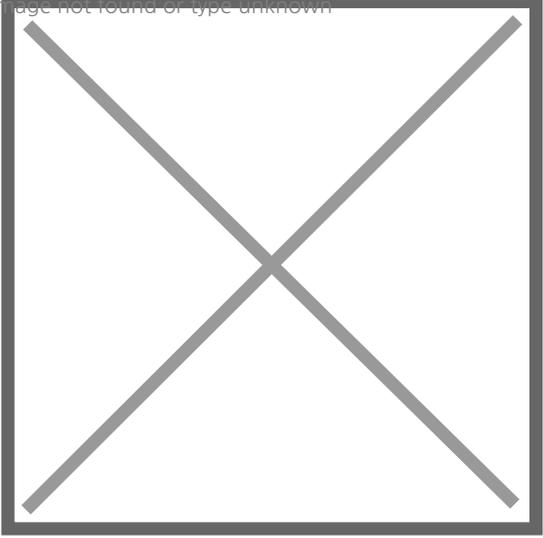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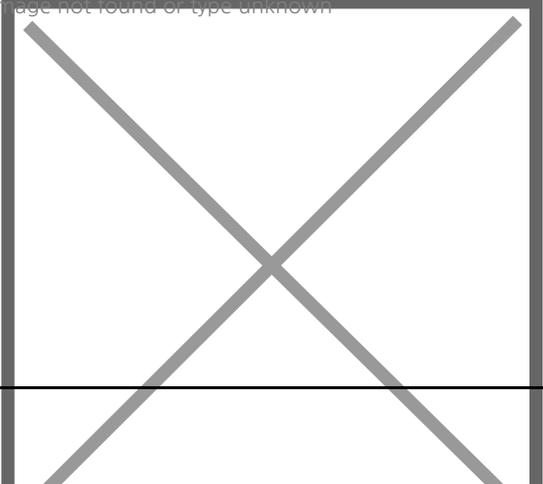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62~62p 빨간키	개념,공식-설명	(2)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에 이동저장탱크 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절고리체결 금속구 및 모서리체결 금속구를 설치할 것	(2)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 소에는 이동저장탱크 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절고리체결 금속구 및 모서리체결 금속구를 설치할 것																									
		수정 사유	본문 오류																									
69~69p 빨간키	개념,공식-설명	㉔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 장의 유리를 두께 0.7mm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F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능능이 인정될 것	㉔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 장의 유리를 두께 0.76mm 이상 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F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능능이 인정될 것																									
		수정 사유	본문 오류																									
69~69p 본문 파트 번호 : 40	문제-본문	<p>40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p> <p>㉑ 저장수용량이다. 용은 제조소 등의 용적이자 등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치 되는 수량을 말 한다.㉒ ㉒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폭발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당성질이 정하는 종류를 말한다.㉓ ㉓ 제조소와 용은 위험물용 제조할 목적으로 저장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사도지사의 허 가 받은 장소를 말한다.㉔ ㉔ 제조소 등 기타 용은 제조소-저장소일만 취급소여 취급소만을 말한다.㉕</p> <p>해설: 용어와 같이 답해 보자.㉑ (㉑) 위험물 : 인화성 또는 폭발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항항이 정하는 종류.㉒ (㉒) 위험물 :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항항 별표(㉒)에 정하는 수량.㉓ (㉓)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취급수량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사도지사의 허가 받은 장소.㉔ (㉔) 취급소 : 취급수량 이상과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다음항항 별표(㉒)에 정하는 장소로서 사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장소.㉕ (㉕) 취급소 : 취급수량 이상과 위험물을 제조하기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다음항항 별표(㉒)에 정하는 장소로서 사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장소.㉖ (㉖) 제조소 용 : 제조소-취급소 및 취급소.㉗</p>	<p>4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교에 따른 내용이다. 다음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p> <p>가. “가연성고체”라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㉑)의 위험성 또는 (㉒)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p> <p>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속성물질”이라 함은 (㉑)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p> <p>다. “(㉑)”라 함은 함은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㉑)</th> <th>(㉒)</th> <th>(㉑)</th> <th>(㉑)</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인화</td> <td>발화</td> <td>고체</td> <td>인화성 액체</td> </tr> <tr> <td>②</td> <td>인화</td> <td>발화</td> <td>액체</td> <td>인화성 액체</td> </tr> <tr> <td>③</td> <td>발화</td> <td>인화</td> <td>고체 또는 액체</td> <td>산화성 액체</td> </tr> <tr> <td>④</td> <td>발화</td> <td>인화</td> <td>고체 또는 액체</td> <td>산화성 고체</td> </tr> </tbody> </table> <p>해설) 시행령상의 정의</p> <p>가. “가연성고체”라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p> <p>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속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p> <p>다. “산화성액체”라 함은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p> <p>해답) ③</p>		(㉑)	(㉒)	(㉑)	(㉑)	①	인화	발화	고체	인화성 액체	②	인화	발화	액체	인화성 액체	③	발화	인화	고체 또는 액체	산화성 액체	④	발화	인화	고체 또는 액체	산화성 고체
			(㉑)	(㉒)	(㉑)	(㉑)																						
①	인화	발화	고체	인화성 액체																								
②	인화	발화	액체	인화성 액체																								
③	발화	인화	고체 또는 액체	산화성 액체																								
④	발화	인화	고체 또는 액체	산화성 고체																								
		수정 사유	문제 중복으로 인한 교체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71~71p 본문 파트 번호 : 46	문제-본문	② 과염소산, 과요드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② 과염소산, 과요드산, 질산 , 과산화수소																						
		수정 사유	문제 오류																						
72~72p 빨간키	개념,공식-설명	<table border="1"> <tr> <td>건축물 구조</td> <td>재료, 내화구조, 또는 내화구조, 재료, 내화구조, 각종물 내화구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 및 출입구: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창: 연소가 우려가 있는 부분에 창을 두지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출입구: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연소가 우려 되는 벽 또는 창에 출입구: 단열식 갑종방화문) </td> </tr> <tr> <td>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방일유리</td> <td></td> <td>준 용</td> </tr> <tr> <td>전기설비</td> <td>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것</td> <td>준 용</td> </tr> <tr> <td>배합설 기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합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배합 불침투수 재료하고 적당한 경사, 침유설비 설치 출입구: 자재식에 갑종방화문 출입구 문턱높이: 0.1 이상 가연성공기 또는 미분: 직방으로 방출하는 설비 설치 </td> <td>준 용</td> </tr> </table>	건축물 구조	재료, 내화구조, 또는 내화구조, 재료, 내화구조, 각종물 내화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 및 출입구: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창: 연소가 우려가 있는 부분에 창을 두지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출입구: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연소가 우려 되는 벽 또는 창에 출입구: 단열식 갑종방화문) 	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방일유리		준 용	전기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것	준 용	배합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합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배합 불침투수 재료하고 적당한 경사, 침유설비 설치 출입구: 자재식에 갑종방화문 출입구 문턱높이: 0.1 이상 가연성공기 또는 미분: 직방으로 방출하는 설비 설치 	준 용	<table border="1"> <tr> <td>장 및 출입구: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 연소가 우려가 있는 부분에 창을 두지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출입구: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연소가 우려 되는 벽 또는 창에 출입구: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td> </tr> <tr> <td>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방일유리</td> <td>준 용</td> </tr> <tr> <td>전기설비</td> <td>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것</td> <td>준 용</td> </tr> <tr> <td>배합설 기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합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배합 불침투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 침유설비 설치 출입구: 자동폐쇄식에 갑종방화문 출입구 문턱높이: 0.1m 이상 가연성공기 또는 미분: 직방 위로 방출하는 설비 설치 </td> <td>준 용</td> </tr> </table>	장 및 출입구: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 연소가 우려가 있는 부분에 창을 두지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출입구: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연소가 우려 되는 벽 또는 창에 출입구: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방일유리	준 용	전기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것	준 용	배합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합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배합 불침투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 침유설비 설치 출입구: 자동폐쇄식에 갑종방화문 출입구 문턱높이: 0.1m 이상 가연성공기 또는 미분: 직방 위로 방출하는 설비 설치 	준 용
건축물 구조	재료, 내화구조, 또는 내화구조, 재료, 내화구조, 각종물 내화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 및 출입구: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창: 연소가 우려가 있는 부분에 창을 두지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출입구: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연소가 우려 되는 벽 또는 창에 출입구: 단열식 갑종방화문) 																							
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방일유리		준 용																							
전기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것	준 용																							
배합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합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배합 불침투수 재료하고 적당한 경사, 침유설비 설치 출입구: 자재식에 갑종방화문 출입구 문턱높이: 0.1 이상 가연성공기 또는 미분: 직방으로 방출하는 설비 설치 	준 용																							
장 및 출입구: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 연소가 우려가 있는 부분에 창을 두지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출입구: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연소가 우려 되는 벽 또는 창에 출입구: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방일유리	준 용																								
전기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것	준 용																							
배합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합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배합 불침투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 침유설비 설치 출입구: 자동폐쇄식에 갑종방화문 출입구 문턱높이: 0.1m 이상 가연성공기 또는 미분: 직방 위로 방출하는 설비 설치 	준 용																							
		수정 사유	본문 오류																						
77~77p 빨간키	개념,공식-설명	<table border="1"> <tr> <td>유해성을 저장 취급하는 것</td> <td>물분무소화설비</td> </tr> <tr> <td>인화점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td> <td>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td> </tr> <tr> <td>그 밖의 것</td> <td>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용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당 소화설비)</td> </tr> <tr> <td>저공압크</td> <td>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비산화탄소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td> </tr> <tr> <td>해상탱크</td> <td>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td> </tr> </table>	유해성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용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당 소화설비)	저공압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비산화탄소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table border="1"> <tr> <td>유해성을 저장 취급하는 것</td> <td>물분무소화설비</td> </tr> <tr> <td>인화점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td> <td>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td> </tr> <tr> <td>그 밖의 것</td> <td>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용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당 소화설비)</td> </tr> <tr> <td>저공압크</td> <td>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td> </tr> <tr> <td>해상탱크</td> <td>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td> </tr> </table>	유해성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용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당 소화설비)	저공압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유해성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용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당 소화설비)																								
저공압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비산화탄소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유해성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용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당 소화설비)																								
저공압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수정 사유	본문 오류																						
78~78p 본문 파트	개념,공식-설명	<p>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6.1.27. 개정></p> <p>②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5.08.28. 입법예고 개정 추진 중></p> <p>③ 품명 등의 변경신고서(시행규칙 제10조)</p>	<p>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품명 등의 변경신고서(시행규칙 제10조)</p>																						
		수정 사유	본문 오류																						
89~89p 본문 파트	개념,공식-설명	<p>(3) 탱크안전성능 검사의 종류</p> <p>① 기초·지반검사</p> <p>② 충수·수압검사</p> <p>④ 용접부검사</p> <p>⑤ 암반탱크검사</p>	<p>(3) 탱크안전성능 검사의 종류</p> <p>① 기초·지반검사</p> <p>② 충수·수압검사</p> <p>③ 용접부검사</p> <p>④ 암반탱크검사</p>																						
		수정 사유	본문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94~94p 플러스원 박스 내용	개념,공식-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수압시험 제외 - (동일) - (동일)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수압검사 제외 - (동일) - (동일) -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수정 사유	본문 오류
95~95p 본문 파트	문제-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수압검사 · 내용 : 위험물탱크의 누설·변형에 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신청시기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검사결과 : 탱크검사필증교부 · 해당탱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용기 등의 검사)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수압검사 · 내용 : 위험물탱크의 누설·변형에 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 신청시기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검사결과 : 탱크검사필증교부 · 해당탱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용기 등의 검사)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수정 사유	본문 오류
99~99p 본문 파트	개념,공식-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영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접수일시·검사일·검사번호·검사자·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원이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영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접수일시·검사일·검사번호·검사자·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수정 사유	본문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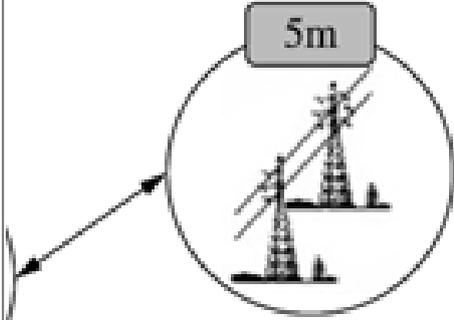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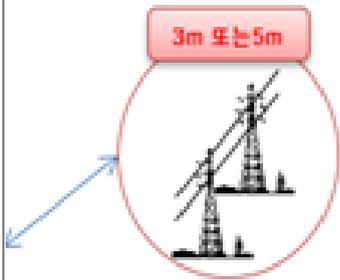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10~110p 본문 파트	개념,공식-설명	<p>(4) 체납과징금 징수 절차</p> <p>사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법 제13조 제3항).</p> <p>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정: 법률 제11998호(2013.08.06)</p> <p>·시행: 2014.08.07</p> <p>·목적: 이 법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5) 과징금의 부과기준(규칙 제26조 관련 별표3의2 과징금 금액</p> <p>① 일반기준</p> <p>㉠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따라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 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p> <p>㉡ 과징금 부과금액은 당해 제조소 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목의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액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환산한다.</p> <p>㉢ 연간 매출액이 없거나 연간 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을 기준으로 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p>	<p>(4) 체납과징금 징수 절차</p> <p>사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법 제13조 제3항).</p> <p>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제정: 법률 제11998호(2013.08.06)</p> <p>·개정: 법률 제17091호(2020.03.24)</p> <p>·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5) 과징금의 부과기준(규칙 제26조 관련 별표3의2 과징금 금액</p> <p>① 일반기준</p> <p>㉠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제2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의 기간에 따라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 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p> <p>㉡ 과징금 부과금액은 당해 제조소 등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목의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매출액은 전년도 1년간의 총 매출액의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총 매출액을 환산한다.</p> <p>㉢ 연간 매출액이 없거나 연간 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을 기준으로 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p>
		수정 사유	본문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11~111p 본문 파트	개념, 공식-설명	<p>② 과징금 산정기준</p> <p>①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p> $\text{과징금금액} = \text{1일평균매출액} \times \text{사용장지일수} \times 0.0574$ <p>(6)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5">소방관계법 과징금처분[처분권자:소방서장(사도지사 권한 위임)]</th> </tr> <tr> <th>처분대상</th> <th>요건</th> <th>최고처분금액</th> <th>금액산정금액 기준</th> <th>감경</th> </tr> </thead> <tbody> <tr> <td>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td> <td>영업(사용)정지가 그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td> <td>2억원 이하</td> <td>전년도의 4년간 매출금액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배수) ※ 자기발전, 자기난방, 유사목적: 1/2 금액</td> <td>없음</td> </tr> <tr> <td>소방시설업자</td> <td></td> <td>3천만원 이하</td> <td>도급(계약)금액</td> <td>1/2</td> </tr> <tr> <td>소방시설관리업자</td> <td></td> <td>3천만원 이하</td> <td>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td> <td>1/2</td> </tr> <tr> <td>방염업 등록업자</td> <td></td> <td>3천만원 이하</td> <td>전년도 연간 매출금액</td> <td>1/2</td> </tr> </tbody> </table>	소방관계법 과징금처분[처분권자:소방서장(사도지사 권한 위임)]					처분대상	요건	최고처분금액	금액산정금액 기준	감경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영업(사용)정지가 그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	전년도의 4 년간 매출금액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배수) ※ 자기발전, 자기난방, 유사목적: 1/2 금액	없음	소방시설업자		3천만원 이하	도급(계약)금액	1/2	소방시설관리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	1/2	방염업 등록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 연간 매출금액	1/2	<p>② 과징금 산정기준</p> <p>①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기준</p> $\text{과징금금액} = \text{1일평균매출액} \times \text{사용장지일수} \times 0.0574$ <p>(6) 소방관계법령 과징금 처분 총정리</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5">소방관계법 과징금처분[처분권자:소방서장(사도지사 권한 위임)]</th> </tr> <tr> <th>처분대상</th> <th>요건</th> <th>최고처분금액</th> <th>금액산정금액 기준</th> <th>감경</th> </tr> </thead> <tbody> <tr> <td>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td> <td>영업(사용)정지가 그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td> <td>2억원 이하</td> <td>전년도의 1일 평균 매출금액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배수) ※ 자기발전, 자기난방, 유사목적: 1/2 금액</td> <td>없음</td> </tr> <tr> <td>소방시설업자</td> <td></td> <td>3천만원 이하</td> <td>도급(계약)금액</td> <td>1/2</td> </tr> <tr> <td>소방시설관리업자</td> <td></td> <td>3천만원 이하</td> <td>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td> <td>1/2</td> </tr> <tr> <td>방염업 등록업자</td> <td></td> <td>3천만원 이하</td> <td>전년도 연간 매출금액</td> <td>1/2</td> </tr> </tbody> </table>	소방관계법 과징금처분[처분권자:소방서장(사도지사 권한 위임)]					처분대상	요건	최고처분금액	금액산정금액 기준	감경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영업(사용)정지가 그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	전년도의 1일 평균 매출금액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배수) ※ 자기발전, 자기난방, 유사목적: 1/2 금액	없음	소방시설업자		3천만원 이하	도급(계약)금액	1/2	소방시설관리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	1/2	방염업 등록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 연간 매출금액	1/2
소방관계법 과징금처분[처분권자:소방서장(사도지사 권한 위임)]																																																															
처분대상	요건	최고처분금액	금액산정금액 기준	감경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영업(사용)정지가 그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	전년도의 4 년간 매출금액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배수) ※ 자기발전, 자기난방, 유사목적: 1/2 금액	없음																																																											
소방시설업자		3천만원 이하	도급(계약)금액	1/2																																																											
소방시설관리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	1/2																																																											
방염업 등록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 연간 매출금액	1/2																																																											
소방관계법 과징금처분[처분권자:소방서장(사도지사 권한 위임)]																																																															
처분대상	요건	최고처분금액	금액산정금액 기준	감경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영업(사용)정지가 그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	전년도의 1일 평균 매출금액 위험물의 허가수량(지정수량배수) ※ 자기발전, 자기난방, 유사목적: 1/2 금액	없음																																																											
소방시설업자		3천만원 이하	도급(계약)금액	1/2																																																											
소방시설관리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	1/2																																																											
방염업 등록업자		3천만원 이하	전년도 연간 매출금액	1/2																																																											
		수정 사유	본문 오류																																																												
115~115p 본문 파트 번호 : 11	문제-본문	<p>④ 한국소방 안전기술원</p>	<p>④ 한국소방 산업기술원</p>																																																												
		수정 사유	문제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p>117~117p 본문 파트 번호 : 17</p>	<p>문제-본문</p>	<p>17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p> <p>②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금액은 '1일 평균매출액×사용정지 일수×0.574'이다.</p> <p>③ 과징금 산정기준에는 1일 평균매출액 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p> <p>④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해설</p>  <p>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액 1일 평균 매출액 × 사용정지 일수 × 0.0574</p> <p>18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징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 <p>① 위험물 저장량과 취급량이 다른 경우에는 둘 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한다.</p> <p>② 위험물 취급량이 지정수량 300배인 경우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300 천원으로 산정한다.</p> <p>③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④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이 표에 의한 금액의 3분의 1을 과징금의 금액으로 한다.</p> 	<p>17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 <p>①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p> <p>②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금액은 '1일 평균매출액×사용정지 일수×0.574'이다.</p> <p>③ 과징금 산정기준에는 1일 평균매출액 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p> <p>④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징제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p> <p>해설</p>  <p>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부과액 1일 평균 매출액 × 사용정지 일수 × 0.0574</p> <p>18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징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p> <p>① 위험물 저장량과 취급량이 다른 경우에는 둘 중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한다.</p> <p>② 위험물 취급량이 지정수량 300배인 경우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300 천원으로 산정한다.</p> <p>③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④ 자가발전, 자가난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이 표에 의한 금액의 3분의 1을 과징금의 금액으로 한다.</p>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23~123p 플러스원 박스 내용	개념,공식-설명	2. 소방청장(소방안전협회)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2. 소방청장(한국소방안전원)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수정 사유	본문 오류
133~133p (4)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 2번, ㄴ번	개념,공식-설명	선임 신고 : 선임한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선임 신고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수정 사유	해설 오류
145~145p 04 탱크시험자 하단	개념,공식-설명	· 위험물을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만 제조소 등의 안전이 확보되기에 전문적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탱크안전성능시험 및 제조소 등의 점검·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탱크의 안전을 확보 및 제조소 등에 있어 관리상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 위험물은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만 제조소 등의 안전이 확보되기에 전문적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하여금 탱크안전성능시험 및 제조소 등의 점검·검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탱크의 안전을 확보 및 제조소 등에 있어 관리상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수정 사유	본문 오류
180~180p 본문 파트	개념,공식-설명	(4) 운반용기 검사 신청(규칙 제51조 제2항) ① 신청자 :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② 제출처 : 한국소방안전기술원	(4) 운반용기 검사 신청(규칙 제51조 제2항) ① 신청자 :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② 제출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수정 사유	본문 오류
182~182p 본문 파트	문제-본문	(5)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 조 제2항 관련 별표21)★★★ ①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①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반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할 수 있다.	(5)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 조 제2항 관련 별표21)★★★ ①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①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할 수 있다.
		수정 사유	본문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89~189p 본문 파트	개념,공식-설명	<p>(1)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p> <p>① 출입·검사의 수단</p> <p>①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명령의 주체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p>	<p>(1) 소방청장(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구조·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p> <p>① 출입·검사의 수단</p> <p>①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명령의 주체 :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p>																																																								
		수정 사유	본문 오류																																																								
229~229p 본문 파트	개념,공식-설명	<table border="1"> <tr> <td>정기점검</td> <td>정기점검 1회</td> <td>1년회 이상</td> <td>관계인이 자제 또는 지체</td> </tr> <tr> <td>정기점검</td> <td>정기점검리포트 작성결과 통보</td> <td>10일 이내</td> <td>점검일부시행자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td> </tr> <tr> <td>정기점검</td> <td>정기점검기록보존</td> <td>3년간</td> <td></td> </tr> <tr> <td>구조안전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td> <td>점검시기</td> <td>기간 내에 1회</td> <td>한방장사 점검교부 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공사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td> </tr> <tr> <td>구조안전점검</td> <td>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td> <td>25년, 30년</td> <td></td> </tr> <tr> <td>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td> <td>정기검사 시기</td> <td></td> <td>•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한방장사검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td> </tr> <tr> <td>정기검사</td> <td>정기검사결과 교부 및 통보</td> <td>16일 이내</td> <td>교부 : 검사공표일로부터 관계인, 통보 : 검사공표일로부터 소방서장</td> </tr> </table>	정기점검	정기점검 1회	1년회 이상	관계인이 자제 또는 지체	정기점검	정기점검리포트 작성결과 통보	10일 이내	점검일부시행자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	정기점검	정기점검기록보존	3년간		구조안전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	점검시기	기간 내에 1회	한방장사 점검교부 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공사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	구조안전점검	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	25년, 30년		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	정기검사 시기		•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한방장사검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정기검사	정기검사결과 교부 및 통보	16일 이내	교부 : 검사공표일로부터 관계인, 통보 : 검사공표일로부터 소방서장	<table border="1"> <tr> <td>정기점검</td> <td>정기점검 1회</td> <td>1년회 이상</td> <td>관계인이 자제 또는 지체</td> </tr> <tr> <td>정기점검</td> <td>정기점검리포트 작성결과 통보</td> <td>10일 이내</td> <td>점검일부시행자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td> </tr> <tr> <td>정기점검</td> <td>정기점검기록보존</td> <td>3년간</td> <td></td> </tr> <tr> <td>구조안전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td> <td>점검시기</td> <td>기간 내에 1회</td> <td>한방장사 점검교부 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기술원에게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td> </tr> <tr> <td>구조안전점검</td> <td>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td> <td>25년, 30년</td> <td></td> </tr> <tr> <td>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td> <td>정기검사 시기</td> <td></td> <td>•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한방장사검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td> </tr> <tr> <td>정기검사</td> <td>정기검사결과 교부 및 통보</td> <td>10 이내</td> <td>교부 : 검사공표일로부터 관계인, 통보 : 검사공표일로부터 소방서장</td> </tr> </table>	정기점검	정기점검 1회	1년회 이상	관계인이 자제 또는 지체	정기점검	정기점검리포트 작성결과 통보	10일 이내	점검일부시행자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	정기점검	정기점검기록보존	3년간		구조안전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	점검시기	기간 내에 1회	한방장사 점검교부 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기술원에게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	구조안전점검	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	25년, 30년		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	정기검사 시기		•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한방장사검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정기검사	정기검사결과 교부 및 통보	10 이내	교부 : 검사공표일로부터 관계인, 통보 : 검사공표일로부터 소방서장
정기점검	정기점검 1회	1년회 이상	관계인이 자제 또는 지체																																																								
정기점검	정기점검리포트 작성결과 통보	10일 이내	점검일부시행자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																																																								
정기점검	정기점검기록보존	3년간																																																									
구조안전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	점검시기	기간 내에 1회	한방장사 점검교부 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공사에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																																																								
구조안전점검	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	25년, 30년																																																									
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	정기검사 시기		•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한방장사검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정기검사	정기검사결과 교부 및 통보	16일 이내	교부 : 검사공표일로부터 관계인, 통보 : 검사공표일로부터 소방서장																																																								
정기점검	정기점검 1회	1년회 이상	관계인이 자제 또는 지체																																																								
정기점검	정기점검리포트 작성결과 통보	10일 이내	점검일부시행자가 관계인에게 완료한 날로부터																																																								
정기점검	정기점검기록보존	3년간																																																									
구조안전점검 (50년 이상 옥외탱크)	점검시기	기간 내에 1회	한방장사 점검교부 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 (기술원에게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공사에 한 경우)																																																								
구조안전점검	구조안전점검 기록 보존	25년, 30년																																																									
정기검사 (50년 이상 옥외탱크)	정기검사 시기		• 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한방장사검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정기검사	정기검사결과 교부 및 통보	10 이내	교부 : 검사공표일로부터 관계인, 통보 : 검사공표일로부터 소방서장																																																								
		수정 사유	본문 오류																																																								
233~233p 본문 파트 번호 : 11	개념,공식-설명	<p>③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수정 사유	본문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40~240p 그림 설명	개념,공식-설명	<p>사용전압 35,000V 초과-3m 7,000V 초과 35,000V 이하</p> 	<p>-사용전압 35,000V 초과: 5m -7,000V 초과 35,000V 이하: 3m</p> 																												
		수정 사유	본문 오류																												
243~243p 플러스원 박스 내용	개념,공식-설명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공지의 너비</th> </tr> <tr> <th colspan="2">옥내저장소</th> <th rowspan="2">옥외 저장소</th> <th rowspan="2">옥외탱크 저장소</th> </tr> <tr> <th>벽, 바닥이 내화구조</th> <th>그 밖의 건축물</th> </tr> </thead> <tbody> <tr> <td>0.5</td> <td>0.5</td> <td>3</td> <td>3</td> </tr> </tbody> </table>	공지의 너비				옥내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탱크 저장소	벽, 바닥이 내화구조	그 밖의 건축물	0.5	0.5	3	3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공지의 너비</th> </tr> <tr> <th colspan="2">옥내저장소</th> <th rowspan="2">옥외 저장소</th> <th rowspan="2">옥외탱크 저장소</th> </tr> <tr> <th>벽, 기둥, 바닥 의 내화구조</th> <th>그 밖의 건축물</th> </tr> </thead> <tbody> <tr> <td>0.5</td> <td>0.5</td> <td>3</td> <td>3</td> </tr> </tbody> </table>	공지의 너비				옥내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탱크 저장소	벽, 기둥, 바닥 의 내화구조	그 밖의 건축물	0.5	0.5	3	3
공지의 너비																															
옥내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탱크 저장소																												
벽, 바닥이 내화구조	그 밖의 건축물																														
0.5	0.5	3	3																												
공지의 너비																															
옥내저장소		옥외 저장소	옥외탱크 저장소																												
벽, 기둥, 바닥 의 내화구조	그 밖의 건축물																														
0.5	0.5	3	3																												
		수정 사유	본문 오류																												
253~253p 본문 파트	개념,공식-설명	<p>④ 환기·재광설비 설치제외</p> <p>㉠ 환기설비 제외 :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p> <p>㉡ 채광설비 제외 :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p>	<p>④ 환기·재광설비 설치제외</p> <p>㉠ 환기설비 제외 :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p> <p>㉡ 채광설비 제외 :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가 확보되는 건축물</p>																												
		수정 사유	본문 오류																												
258~258p 본문 파트	개념,공식-설명	<p>(4) 압력계 및 안전장치</p> <p>① 설치 목적</p> <p>위험물을 가압 는 설비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반응 등에 의해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는 적절한 압력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험물의 분출, 설비의 파괴 등에 의해 화재 등의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에는 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압력계 및 안전장치 설치 예] 그림설명</p> <p>강압밸브</p>	<p>(4) 압력계 및 안전장치</p> <p>① 설치 목적</p> <p>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반응 등에 의해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는 적절한 압력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험물의 분출, 설비의 파괴 등에 의해 화재 등의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비에는 압력계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압력계 및 안전장치 설치 예] 그림설명</p> <p>강압밸브</p>																												
		수정 사유	본문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480~480p 본문 파트	개념, 공식-설명	<table border="1"> <tr> <td></td> <td>가우려 되는 벽 또는 창에 출입구: [자백식 갑종 방화문]</td> <td></td> </tr> <tr> <td>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 당일유리</td> <td></td> <td>준 용</td> </tr> <tr> <td>전기설비</td> <td>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것</td> <td>준 용</td> </tr> <tr> <td>배합설 기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바닥 불침투수 계보하고 적당한 경사, 김유설비 설치 </td> <td>준 용</td> </tr> </table>		가우려 되는 벽 또는 창에 출입구: [자백식 갑종 방화문]		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 당일유리		준 용	전기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것	준 용	배합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바닥 불침투수 계보하고 적당한 경사, 김유설비 설치 	준 용	<table border="1"> <tr> <td></td> <td>가우려 되는 벽 또는 창에 출입구: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td> <td></td> </tr> <tr> <td>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 당일유리</td> <td></td> <td>준 용</td> </tr> <tr> <td>전기설비</td> <td>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것</td> <td>준 용</td> </tr> <tr> <td>배합설 기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바닥 불침투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 김유설비의 설치 출입구 : 자동폐쇄식에 갑종방화문 출입구 문턱높이 : 0.1m 이상 가연성증기 또는 미분 :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 설치 </td> <td>준 용</td> </tr> </table>		가우려 되는 벽 또는 창에 출입구: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 당일유리		준 용	전기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것	준 용	배합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바닥 불침투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 김유설비의 설치 출입구 : 자동폐쇄식에 갑종방화문 출입구 문턱높이 : 0.1m 이상 가연성증기 또는 미분 :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 설치 	준 용
	가우려 되는 벽 또는 창에 출입구: [자백식 갑종 방화문]																										
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 당일유리		준 용																									
전기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것	준 용																									
배합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바닥 불침투수 계보하고 적당한 경사, 김유설비 설치 	준 용																									
	가우려 되는 벽 또는 창에 출입구: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출입구에 유리 설치시 : 당일유리		준 용																									
전기설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것	준 용																									
배합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일 것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 바닥 불침투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 김유설비의 설치 출입구 : 자동폐쇄식에 갑종방화문 출입구 문턱높이 : 0.1m 이상 가연성증기 또는 미분 :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 설치 	준 용																									
		수정 사유	본문 오류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